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의안 번호	1051
----------	------

제출년월일 : 2004.10.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종로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구 명예구민증수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안 제2조제1항)

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외국인

나. 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 구 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종로구민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함.

(안 제3조)

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하고 메달이나 기념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음 (안 제5조제1항)

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안 제7조)

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05년 예산반영 예정

나.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 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이하 “구 의원”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의 방법 및 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전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인
2.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2인
3. 구 소속 5급 이상 직원 2인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병 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